미국 - 미국 기업 대상 디지털서비스세 부과 국가에 대한 관세보복 유예

■ **미국무역대표부(USTR)는 2021년 6월 2일 오스트리아, 인도, 이탈리아, 스페인, 터키 및 영국(이하 '이 사건 6개국'이라고 함)이 미국 글로벌 IT기업에 부과한 디지털서비스세(DST)로 미국 기업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밝히며, 이 사건 6개국 수입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함[1)]**

○ USTR은 2021년 1월 특정 국가들이 채택한 디지털서비스세에 대한 조사를 시작함

– 그중 이 사건 6개국에서 채택한 디지털서비스세가 국제 조세원칙을 위반한 채 미국 기업들에 대해 차별적 또는 비합리적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

○ USTR은 통상법 제301조[2), 3)]에 근거하여 이 사건 6개국에 대한 제재로서 해당 국가 수입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적용할 것을 밝힘

○ 다만, OECD 및 G20을 통해 디지털세 관련 협상 추가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최대 180일 동안 관세보복을 유예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함

– 만일 국제적 협의를 통해 디지털서비스세에 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할 경우 제재 관세를 실행할 것임을 경고함

<자료수집 및 조사: 이나현 변호사>

1)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, "USTR Announces, and Immediately Suspends, Tariffs in Section 301 Digital Services Taxes Investigations," 2021. 6. 2., https://ustr.gov/about-us/policy-offices/press-office/press-releases/2021/june/ustr-announces-and-immediately-suspends-tariffs-section-301-digital-services-taxes-investigations, 검색일자: 2021. 6. 15.

2) 통상법 301조란, 미국 교역 상대국이 국제무역협정을 위반하거나 불공정 무역행위로 미국의 이익을 침해할 때 해당 정책, 행위를 제거하기 위해 무역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한 법규 또는 행정명령을 말함.

3) Federal Register, "Initiation of Section 301 Investigations of Digital Services Taxes," https://www.federalregister.gov/documents/2020/06/05/2020-12216/initiation-of-section-301-investigations-of-digital-services-taxes, 검색일자: 2021. 6. 15.